

개인형IRP 계좌이체 주요 내용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사업부



Agenda

01	계좌이체 적용대상
02	계좌이체의 제한
03	가입일 적용
04	계좌 유형별 이체 가능 여부
05	계좌이체의 절차
06	이체 사례별 세부방안
07	기타사항
08	Q&A

계좌이체 적용대상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의 이체란?

-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
-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개인형IRP 상호간,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간의 이체가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계좌이체 적용대상

- 연령과 가입기간 ✓
 - 1. 가입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
 - 2.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단, 이체하는 연금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경우 5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
- 개인퇴직계좌(IRA)도 이체 적용대상에 포함 ✓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94.6~00.12에 가입한 舊개인연금저축은 이체 대상에서 제외

계좌 이체의 제한

제한 사유

- 1. 연금수령 중인 계좌로의 이체 불가
 -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가입자부담금 추가 입금도 불가 「소득세법 제 40조의2」)
- 2. **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 → **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 불가
- 3.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법적 지급 제한 등의 계좌 이체 불가
- 4. 일부 금액만 이체 불가 (전액 이체만 가능)
- 5. 승계받은 계좌의 이체 불가
- 6. 이체하는 계좌에 12.12.31 이전 DC에 납입한 가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체 불가
- 7. 연금개시된 계좌의 이체는 가능하나 **종신연금을 수령 중인 연금계좌는 이체 불가**

가입일 적용





이체계좌는 이체받는 계좌의 가입일을 적용

- ① 이체받는 계좌의 가입일이 종전계좌보다 더 앞서는 경우도 이체 가능 (ex> 13.8.1 가입계좌 → 13.4.1 가입계좌로 이체 가능)
- ②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 → 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 불가능)
- ③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체 전 연금계좌의 가입일(기존계좌 가입일)로 선택가능
 - i) 연금계좌를 신규하여 <u>잔액이 없고</u>
 - ii) 종전 연금계좌로부터 <mark>전액 이체(종전 계좌는 해지)</mark>



과세는 선택한 가입일에 따라 일괄 적용



13.3.1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후 퇴직소득 전액을 신규 개설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으로 적용

*DB제도의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로부터 새로 설정된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도 기산연차를 6년차 유지



연금계좌 가입일은 연금 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서 계좌 개설일(계약체결일)과는 무관

계좌 유형별 이체 가능 여부

1.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간의 계좌이체

수관 이관	⇒ 13.3.1 이전 연금저축계좌	⇒ 13.3.1 이후 연금저축계좌	⇒ 13.3.1 이전 개인형IRP	⇒ 13.3.1 이후 개인형IRP
13.3.1 이전 연금저축계좌 ⇒	0	0	0	0
13.3.1 이후 연금저축계좌 ⇒	X	0	X	0
13.3.1 이전 개인형IRP ⇒	0	0	0	0
13.3.1 이후 개인형IRP ⇒	x	0	X	0

 ▷ 연금저축계좌가 해지가산세를 적용받는 계좌인 경우에는 이체는 가능하나, 추후 해지 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가입자에게 사전에 고지

2. 개인형IRP 상호 간의 계좌이체

수관 이관	⇒ 13.3.1 이전 연금저축계좌	⇒ 13.3.1 이후 연금저축계좌
13.3.1 이전 개인형IRP ⇒	0	0
13.3.1 이후 연금저축계좌 ⇒	X	0

계좌이체의 절차

1. [가입자] 이체받을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 & 이체신청서 작성

- 이체받을 금융회사는 계좌이체 신청 시 가입자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가입자가 확인 후 서명
 - 이체받을 금융회사의 기존 연금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생략되므로 이체 전 금융회사에서도 계좌이체 신청 가능
 - 계좌이체 신청 후 취소는 당초 계좌이체 신청 시 이체 의사확인 방법에 따라 다름
 - ☞ 전화통화 선택 시 : 통화로 취소 의사 표시
 - ☞ 이체 전 금융회사 방문 선택 시 : 방문 시 계좌이체 취소 신청서 작성
- 이체 후 매수할 금융상품 결정
 - ☞ 계속성/일회성 매수예정상품변경 등록

2. [이체받을 금융회사] 이체 전 금융회사에 이체신청(취소) 전문 또는 이체신청(취소)서를 발송

■ 신청일(D) 15:30 이전에 신청된 이체건에 대해서는 당일 15:30 까지 발송하고, 15:30 이후에 신청된 이체건은 익영업일에 발송

계좌이체의 절차

3. [이체 전 금융회사] 가입자의 이체 의사를 확인

- 이체의사 확인방법을 전화통화로 선택한 경우, 이체 전 금융회사는 가입자와 통화로 이체의사 확인 및 이체 시 유의사항 설명
 - 정상적으로 녹취 완료 시 상대 금융회사에 이체예정 통보
 -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가 불가하거나 전화녹취 시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 금융회사에 이체예정 취소통보 (전문 거래 시 자동 전송됨)
- 이체의사 확인방법을 **이체 전 금융회사 방문**으로 선택한 경우, 방문 시 이체의사 확인 및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 설명
 - 이체 전 금융회사를 이체신청일(D) + 1 영업일까지 방문하지 않은 경우, 이체신청은 취소되며 동 사실을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통보

4. [이체 전 금융회사] 상대기관에 이체예정(취소) 통보 전문 또는 이체예정(취소) 통보서를 발송

■ 이체예정(취소) 통보는 D+1 영업일 15:30 까지 완료 (다만, 부득이하게 15:30 이후에 가입자의 이체의사를 재확인한 경우에는 익영업일 15:30까지 처리)

계좌이체의 절차

- 5. [이체받을 금융회사] 상대기관에 이체접수(거절) 통보 전문 또는 이체접수(거절) 통보서를 발송
- 이체접수(거절)통보는 이체예정(취소)통보를 받은 날(D+1영업일 또는 D+2영업일) 15:40까지 완료
 - 예정통보 내용 중 "송금예정일"로 이체받을 날짜 확인

- 6. [이체 전 금융회사] 연금계좌 이체명세 및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 전문 또는 이체명세서 및 연금계좌 납입내역서를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송부
- 이체명세서 송부 후, 모든 금융상품의 매도가 완료된 경우 이체받을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전 계좌는 반드시 해지
 - 펀드별 환매기간이 상이한 경우, 가장 긴 환매기간을 가진 펀드까지 모두 환매된 후 송금

- 7. (이체받을 금융회사) 송금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 이체받는 계좌가 신규계좌인 경우 계좌 가입일은 가입자가 기 선택한 날짜로 설정(기존 계좌의 가입일 또는 신규 개설일)

이체 사례별 세부방안

《기존 계좌로의 이체》

- ① 기존 계좌로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이체하는 계좌의 연도별 납입내역을 이체받는 계좌의 연도별 납입내역에 합산
- ② 잔액이 있는 개인형 IRP로 가입일은 이체받을 계좌의 가입일로 적용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체

- ①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체는 신규계좌로 전액이체하고 이체 전 계좌의 가입일을 적용하는 경우만 허용
- ② 연금수령개시 사실까지 이체된 것으로 간주(추가납입 불가)
- ③ 당해연도 연금수령연차, 수령한도 및 기 수령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 송부 ※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수령개시 이후 가입자의 임의 해지가 불가능하여 다른 연금계좌로의 이체 불가

DC의 추가납입금이 있는 경우

- ① 이체 전 연금계좌에 12.12.31 이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납입한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 ☞ 원천징수업무가 어려워 **이체가 불가능**

기타사항



계좌이체 후 원천징수 환급

* 원천징수 후 인출된 계좌를 이체한 후에 가입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원천징수가 있었던 금융회사에서 환급



납입한도 관리

*당해 연도납입금액 중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납입한도(연 1,8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이체받는 계좌에서 이체 전 계좌의 한도만큼 납입한도 상향



동일 금융회사 내의 이체 시 펀드 대체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간의 계좌이체

: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상이하므로 펀드 대체는 불가능함



이체 후 세액공제 적용 한도

*개인부담금 추가납입금의 경우 이체 후 계좌의 세액공제한도 적용





Q1. 계좌이체 가능한 대상은?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가입자 연락이 만 55세 이후
- ②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전액 이체 하는 경우 (단, 이체하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

구 분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판매 기간	94.6 ~ 00.12	01.1 ~ 13.2	13.3 ~ 현재
계좌이체 가능여부	舊개인연금저축 으로 이체 가능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계좌 로 이체 가능	연금저축계좌 로 이체 가능

개인형IRP ↔ 개인형IRP

나이, 가입기간 제한 없음

Q2. 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이체 순서는?



당행 개인형IRP의 잔액유무, 상대기관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에 따라 다릅니다.

당행 개인형IRP 잔액 O

개인형IRP의 가입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순서 상관없이 가입일만 체크

- 당행 개인형IRP의 가입일이 13.3.1. 이전인 경우: 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만 이체 가능
- 당행 개인형IRP의 가입일이 13.3.1. 이후인 경우: 13.3.1. 이전 또는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 모두 이체 가능

당행 개인형IRP 잔액 X

상대계좌의 가입일에 따라 선택

- 상대 계좌 가입일이 모두 13.3.1. 이전이거나 13.3.1. 이후인 경우 : 가입일이 가장 빠른 계좌부터 이체신청
- 상대 계좌 가입일이 13.3.1. 이전과 이후 섞여 있는 경우 : 개인형IRP 지급요건에 따라 고객과 협의 후 선택



*가입일 ISSUE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3.02.1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남입요건 & 지급요건	 만55세 이후 연금수령 10년 이상 납입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5년 이상 가입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 지급

13.3.1. 이전 가입계좌 ⇒ 13.3.1. 이후 가입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① 13.3.1. 이전 가입계좌 가입일 선택 -> 기존 가입기간 인정,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①의 경우는 IRP 0원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
- ② 13.3.1. 이후 가입계좌 가입일 선택 -> 기존 가입기간 포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예시)





당행에 잔액이 없는 개인형IRP 계좌로 다음의 3개 연금계좌를 모두 받아오려면?

A 연금저축보험

가입일 2011. 02. 05

B 연금저축펀드

가입일 2015. 06. 08

C 개인형IRP

가입일 2020. 08. 05

B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행 IRP는 잔액이 없어 가입일 선택 시 기존계좌 가입일(이체하는 계좌의 가입일) 선택 가능한 상황으로, B계좌 수관 후 A와 C계좌를 수관합니다.

만약 A 연금저축보험을 먼저 신청해서, A의 가입일(2013.3.1.이전 가입일)이 적용되면, 나머지 B,C계좌는 13.3.1. 이후 가입한 계좌 이전 불가합니다.



Q4. 기존에 개인형IRP가 없는 고객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형IRP 자격확인서류 징구하여 계좌 신규 후 계좌이체 신청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들어있는 타기관 연금계좌**를 가져오는 경우 자격확인서류 없이 퇴직용으로 계좌 신규 후 이체 가능합니다.

개인형IRP 신규 시 자격 확인 서류

가입대상	확인서류
l . 당행 퇴직연금가입자	없음
II. 타금융기관 퇴직연금가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Ⅲ.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택1) - 카드설계사 및 보험설계사 등 수당직 사업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제출 가능 - 농림·축산·어업 등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선원부,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 허가증(면허증),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 등도 허용
IV.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가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V. 1년 미만 및 단시간근로자 및 퇴직금제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Q5. 개인형IRP 계좌이체 신규(전문방식)

계좌이체 신규(수관) FLOW



영업점

- 계좌 개설 및 [816] 계좌이체 신청
 - (필요시) 계속성 또는 일회성 매수예정상품변경
- [866] 정보 **자동등록** (단, 아래의 경우 조치 필요) ①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급여이전센터로 FAX 발송 ② 인출내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부로 문의 ③ 연금개시 된 계좌의 경우 [816]&[866] 수기등록

Q6. 개인형IRP 계좌이체 해지(전문방식)

계좌이체 해지(이관) FLOW 영업점 • TM완료→[816] 해지1단계 등록 • TM해지(취소/무응답 등) → 예정취소 통보 자동발송(전산조작 불필요) • 이체신청 전문 수신 • 접수통보 전문 수신 • TM대상 자동 등록(전산조작 불필요) • [806] 계좌해지 등록 • [840]잔액 및 운용상품확인 고객상담센터 이체신청 전송 예정통보 전송 계좌 접수통보(수신) 해지 TM (T+1)(T+1~2)해지 $(T\sim T+1)$ • 계좌 개설 • 예정통보 전문 수신 • 이체신청전문 전송 • 접수통보 전문 전송 타기관



계좌이체해지 신청전문 pop-up 도착 시

- ☞ [840] 운용상품조회 및 이탈 방어
 - ETF 보유 시 : 매도 완료 후 재신청 안내
 - 만기매칭형 상품 보유시: 매도 시 환매수수료 징수 안내
- 1 . [816] 계좌이체해지 1단계 등록
- 접수통보 전문 pop-up 확인 후 ☞ [806] 계좌해지 등록

Q7. 그 외



납입이 끝난 연금저축보험을 가져오려 합니다. 상대기관에서 연금개시 후 보내준다고 하는데 수관이 가능할까요?



당행 개인형IRP에 잔액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수관 후 추가 불입 불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형IRP는 연금수령 중입니다. 계좌이체 가능할까요?



기존 계좌로는 수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IRP 신규자격이 되는 경우 추가로 계좌신규 하여 이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1사 예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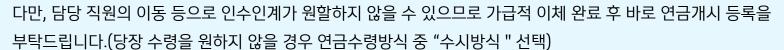
Q7. 그 외



연금수령중인 계좌를 당행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바로 연금수령 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객님이 원할 때 개시등록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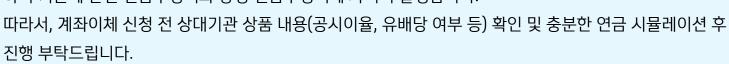


연금수령중인 계좌를 당행으로 가져올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기간지정방식 "으로 연금을 지급하지만, 당행은 "금액지정" 또는 "수시방식"으로 지급가능하여 기존에 받던 연금수령액과 당행 연금수령액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Thank you.

